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274
----------	-------

발의연월일 : 2026. 4. 13.

발 의 자 : 김재원 · 강경숙 · 서왕진
신장식 · 박은정 · 김준형
황운하 · 김남희 · 이해민
한창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고,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현행법령에 따른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보상을 받을 권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보상금수령단체를 통해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상금수령단체는 신탁관리업자와 달리 자발적으로 권리행사를 신탁하지 않은 비회원의 권리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탁관리업자보다 높은 수준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나, 현행법은 보상금수령단체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관리·감독 규정이 미비하여 보상금수령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보상금수령단체에 대해 신탁관리업자와 동일한 수준의 관리·감독 규정을 신설하여 보상금수령단체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0항 등).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정하는 단체”를 “지정하는 단체(이하 “보상금수령단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그 단체를”을 “보상금수령단체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제7항에 따른 단체는”을 “보상금수령단체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항에 따른 단체가”를 “보상금수령단체가”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1항) 중 “제10항에”를 “제11항에”로 한다.

4. 제10항에 따른 지정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⑩ 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 결격 사유, 의무, 감독, 징계의 요구, 업무의 정지, 청문 및 과징금 처분 등은 제105조제7항, 제106조제7항, 제108조, 제108조의2, 제109조제1항제3호·제4호, 제6호부터 제9호까지, 제110조 및 제1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저작권위탁관리업자”는 “보상금수령단체”로, “저작권신탁관리업”, “저작권위탁관리업” 및 “저작권신탁관리”는 “보상금관리”로,

“허가” 및 “신고”는 “지정”으로, “사용료”는 “보상금”으로 본다.

제31조제6항 중 “제11항까지의”를 “제12항까지의”로 한다.

제50조제6항 중 “제25조제10항”을 “제25조제11항”으로 한다.

제75조제2항 중 “제11항까지의”를 “제12항까지의”로 한다.

제76조제2항 중 “제11항까지의”를 “제12항까지의”로 한다.

제76조의2제2항 중 “제11항까지”를 “제12항까지”로 한다.

제82조제2항 중 “제11항까지”를 “제12항까지”로 한다.

제83조제2항 중 “제11항까지”를 “제12항까지”로 한다.

제83조의2제2항 중 “제11항까지”를 “제12항까지”로 한다.

제101조의3제3항 후단 중 “제11항까지의”를 “제12항까지의”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① ~ ⑥ (생략)</p> <p>⑦ 제6항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u>지정하는 단체</u>를 통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u>그 단체</u>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그 단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p> <p>1. ~ 3. (생략)</p> <p><u><신 설></u></p> <p>⑧ <u>제7항에 따른 단체</u>는 그 구성원이 아니라도 보상권리자로부터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자를 위하여 그 권리행사를 거부할 수 없다. 이 경우 그 단체는 자기의 명의로 그 권리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p>	<p>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① ~ ⑥ (현행과 같음)</p> <p>⑦ ----- ----- -----<u>지정하는 단체(이하 “보상금수령단체”라 한다)</u>----- ----- -----<u>보상금수령단체</u>-----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제10항에 따른 지정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u></p> <p>⑧ <u>보상금수령단체</u>는----- ----- ----- ----- ----- ----- -----.</p>

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 3. (생략)

<신설>

⑩ (생략)

⑪ 제7항·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단체의 지정과 취소 및 업무규정, 보상금 분배 공고,

⑨ -----
보상금수령단체가-----

-----.

1. ~ 3. (현행과 같음)

⑩ 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 결정 사유, 의무, 감독, 징계의 요구, 업무의 정지, 청문 및 과징금 처분 등은 제105조제7항, 제106조제7항, 제108조, 제108조의2, 제109조제1항제3호·제4호, 제6호부터 제9호까지, 제110조 및 제1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저작권위탁관리업자”는 “보상금수령단체”로, “저작권신탁관리업”, “저작권위탁관리업” 및 “저작권신탁관리”는 “보상금관리”로, “허가” 및 “신고”는 “지정”으로, “사용료”는 “보상금”으로 본다.

⑪ (현행 제10항과 같음)

⑫ -----제11항에

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⑫ (생략)

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① ~ ⑤ (생략)

⑥ 제5항의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⑧ (생략)

제50조(저작권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① ~ ⑤ (생략)

⑥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난 미분배 보상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25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⑦ (생략)

제75조(방송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

-----.

⑬ (현행 제12항과 같음)

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제12항까지의-----
-----.

⑦·⑧ (현행과 같음)

제50조(저작권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제25조제11항-----
-----.

⑦ (현행과 같음)

제75조(방송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① (현행과 같음)

② -----

급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
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
용한다.

③·④ (생략)

제76조(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
급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
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
용한다.

③·④ (생략)

제76조의2(상업용 음반을 사용하
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에 대
한 보상)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
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는 제2
5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76조제3항·제4항을 준용한
다.

제82조(방송사업자의 음반제작자
에 대한 보상)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
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는 제2
5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12항까지의-----
-----.

③·④ (현행과 같음)

제76조(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① (현행
과 같음)

② -----

-----제12항까지의-----
-----.

③·④ (현행과 같음)

제76조의2(상업용 음반을 사용하
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에 대
한 보상)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12항까
지-----
-----.

제82조(방송사업자의 음반제작자
에 대한 보상) ① (현행과 같
음)

② -----

-----제12항까

제75조제3항·제4항을 준용한다.

제83조(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76조제3항·제4항을 준용한다.

제83조의2(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76조제3항·제4항을 준용한다.

제101조의3(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의 제한) ①·② (생략)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프로그램을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지-----
-----.

제83조(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12항까지-----
지-----
-----.

제83조의2(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12항까지-----
지-----
-----.

제101조의3(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의 제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p>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u>제11항까지</u>의 규정을 준용한다.</p>	<p>----- ----- -----. ----- -----<u>제12항까지</u>의----- -----.</p>
--	---